

다이렉트운전자보험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자살, 자해 등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 보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 보상됩니다.

- 정액보상담보: 사망담보, 후유장해담보 등
- 실손보상담보: 배상책임담보, 재물손해담보 등

Q) 보험기간 중 계약의 변경 가능여부?

A)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종류는?

A)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나 운전여부의 변경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① 가입연령: 만 18세~75세
- 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 ②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만원까지)
- ③ 보험기간: 1년, 3년
- ④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 ⑤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해야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위임)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 장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본 계약	교통 상해 사망 후유 장해 (3~100%) (자가용)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약관에서 정한 3% 이상의 후유장 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
선택 계약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	1사고마다 500만원 한도로 보장

		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일반 상해 골절화상진단 (치아파절 제외)	골절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9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화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 상해 골절 화상 수술	골절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화상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대중 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	
일상생활강력 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중환자실 입원일부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사망	최고 3,000만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최고 3,000만
			중대한법규사 고 42~69일 진단	최고 1,000만 최고

		약물, 도주 사고 제외)	70~139일 진단 140일 이상 진단	2,000만 최고 3,000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사망		최고 5,000만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최고 5,000만
		중대한법규사고 42~69일 진단 70~139일 진단 140일 이상 진단	최고 1,000만 최고 3,000만 최고 5,000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사망		최고 7,000만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최고 7,000만
		중대한법규사고 42~69일 진단 70~139일 진단 140일 이상 진단	최고 1,000만 최고 4,000만 최고 7,000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Ⅳ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사망		최고 1억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최고 1억
		중대한법규사고 42~69일 진단 70~139일 진단 140일 이상 진단	최고 1,000만 최고 5,000만 최고 1억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사망		최고 2억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최고 2억
		중대한법규사고 42~69일 진단 70~139일 진단 140~174일 진단 175일 이상 진단	최고 2,000만 최고 8,000만 최고 1억 최고 1억5천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	21일 미만		최고

	(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 6주미만)(자가용)	하던 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진단 시	150만원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 6주미만)(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21~41일 진단 시	최고 500만원
			21일 미만 진단 시	최고 150만원
	운전중사고벌금 (대인)(2천만원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 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단, 음 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최고 2,000만원	
	운전중사고벌금 (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최고 1,000만원 (단,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벌금 (대인)(3천만원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 은 경우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최고 2,000만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고 3,000만원	
	운전중사고벌금(대물)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 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 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최고 500만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 래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로 변호사선 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 음주, 무면 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 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최고 보험가입금액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3.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5.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최고 보험가입금액
운전중 보복운전피해보상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70만원
자동차사고부상 (1~14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최소 보험가입금액의 1%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100%
자동차사고부상 (1~11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부상등급 중 1~11급을 받은 경우(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최소 보험가입금액의 2%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100%
자동차사고부상 (1~3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부상등급 중	보험가입금액

		1~3급을 받은 경우(약관상의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3% 이상의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변호사 비용 최고 1,5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최고 500만원
자동차사고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중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변호사 비용 최고 1,5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최고 500만원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최고 2,000만원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최고 보험가입금액
	일상생활 배상책임표	보험기간 중 아래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최고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20만원)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자기부담금 20만원)	
	실화(대물)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최고 3억
	재산손해보장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파열, 붕괴)등으로 인하여 가재 및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최고 보험가입금액
	└건물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가재 및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재도난위험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최고 30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④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⑤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⑥ 이 상품의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 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물)(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별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재산손해보장」, 「가재도난위험」 및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 ⑦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해당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예시

(단위 : 원)

구 분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1억	1,870
선택계약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2만	15,010
	일반상해골절화상진단(치아파절제외)	20만	
	일반상해골절화상수술	50만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7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만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	
	자동차사고부상(1~14급)(자가용)	1,000만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3,000만	
	운전중사고별금(대물)(자가용)	500만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	70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자가용)	5,000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2억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500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킵스치료비	20만	
	일상생활배상책임Ⅱ	1억	
	재산손해보장	5,000만	
	가재도난위험	300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500만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가용)	1억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2,000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별금비용	2,000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500만	
보 험 료 합 계			16,880

※ 보험료산출기준 : 남자,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3년, 월납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